

● 제298회 ●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제3차 운영위원회

서울특별시의회 동물복지증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0. 12. 21.

운 영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 【 서울특별시의회 동물복지증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I. 결의안 개요

#### 1. 제안자 및 제안경과

가. 제안자 : 김상훈 의원 등 11명 공동발의

나. 제안일 : 2020. 10. 14.

다. 회부일 : 2020. 10. 26.

라. 의안번호 : 1906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세계적으로 동물보호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1991년 「동물보호법」 제정 이후 2012년 전부개정을 통해 세계수준의 제도를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동물복지 향상에 노력하고 있음.
- 최근 들어, 동물복지 및 동물권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개선이 요구되고 있으나, 실제 반려동물 소유자의 동물학대와 열악한 사육환경 등 동물사육자의 의무이행 등 준수상태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교육·홍보 등을 통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생명존중 의식을 함양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서울수도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여 인간 중심의 소극적 동물관리에서 동물도 생명으로서 존중되고 보호받는 동물복지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위해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동물복지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지만, 현실 속 동물복지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임.

- 이에 서울시가 추진하는 반려동물 및 동물원 동물 등 동물복지정책 방향의 원활한 추진과 제도 개선, 동물복지 시설 확충 및 지원, 동물 보호 및 복지문화 확산 등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서울 조성에 기여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 동물복지증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 3.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7조

나. 예산 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김선희)

### 1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 취지

- 본 결의안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서울시 동물복지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동물보호·복지 문화 확산 등을 지원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서울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의회 동물복지증진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제안되었음.

### 2 특별위원회 구성의 타당성 검토

- 동물복지는 ‘동물이 건강하고 안락하며 영양 상태가 좋고 안전한 상황에서 본래의 습성을 표현할 수 있으며, 고통·두려움·괴롭힘 등의 나쁜 상태를 겪지 않는 것’을 말함.<sup>1)</sup>
- 한국은 1991년 「동물보호법」 제정 이후에도 잔혹하고 다양해진 반려동물 학대 행위와 열악한 유기동물 사육 환경에 대한 감독과 개선 필요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2011년에는 ▶동물등록제 의무화 ▶피학대 동물 구조보호 조치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벌칙 강화 등을 담은 전부개정안이 통과·시행되었음.<sup>2)</sup>
  - 이후 2020년 현재까지도 동물보호와 동물복지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는 활동은 꾸준히 이루어졌음(표-1),

1) 세계동물보건기구(OIE)의 정의를 나인지(2014.3.)가 재인용함.

나인지. 2014.3. “국내 동물복지정책 동향”. 『세계농업』 제163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 국가법령정보센터 “동물보호법” (법률 제10995호, 최종검색일: 2020년 12월 8일) <law.go.kr>

**<표-1> 2012년 「동물복지법」 전부개정 이후 동물복지와 관련된 「동물복지법」 주요 개정 내용**

개정 연도	동물복지와 관련된 주요 개정 내용
2013년 (법률 제11737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물학대행위에 ‘고의로 사료와 물을 주지 않아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추가</li> <li>▶ 동물 구조·보호 행위 주체를 기초자치단체장까지 확대</li> </ul>
2013년 (법률 제1205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물학대 개념 명확화</li> <li>▶ 동물운송 및 도살 기준 강화</li> <li>▶ 동물학대 장면 촬영 영상물 유포 행위 금지</li> <li>▶ 반려동물 판매 시 배송 방법 제한</li> </ul>
2017년 (법률 제1465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에 적용되는 벌칙과 과태료 상향조정</li> <li>▶ 동물생산업을 허가대상으로 전환</li> <li>▶ 동물전시업, 위탁관리업 등 다양한 분야의 영업형태를 법률에 반영</li> <li>▶ 동물산업 영업장의 시설과 인력기준 준수여부 점검, 영업자 교육 의무 규정</li> </ul>
2018년 (법률 제16075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동 동물장묘시설 설치·운영(시설 수요 충족)</li> </ul>
2018년 (법률 제1654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물을 이용하여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선전하는 행위 금지</li> </ul>
2020년 (법률 제16977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록대상동물 판매 시 동물판매업자가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유기동물 수 줄임)</li> <li>▶ 동물을 유기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처벌 강화</li> </ul>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한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sup>3)</sup>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반려동물 양육가구 비율은 26.4%로, 이중 67.3%가 동물등록제에 참여했으며 응답자의 45%는 동물학대

3) 조사대상: 지역별·성별·연령별 비례표본으로 추출한 전국 20~64세 5,000명  
 설문문항: 양육여부, 동물등록여부, 입양경로, 유기동물 입양의사, 안전관리여부, 동물학대 관련 등 53개  
 조사기간과 방법: 2019년 10월 31일~11월 7일, 온라인 패널 조사(CAWI)  
 신뢰수준: 95%(±1.39%p)  
 수행기관: (주)코리아리서치  
 해당 보고서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animal.go.kr)>정책홍보>정보공개에서 확인 가능함(최종검색일: 2020년 12월 8일).

목격 시 신고하겠다고 답변하는 등<sup>4)</sup> 동물복지와 동물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문제 인식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

- 그러나 2020년 경찰청 국정감사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은 2010년 69건에서 2019년 914건으로 1,224%, 이로 인해 검찰에 송치된 피의자는 2010년 78명에서 2019년 973명으로 1,147% 증가하였음.<sup>5)</sup>
- 또한 앞서 소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25.1% 즉, 4명 중 1명은 동물학대 의심 사례를 목격한 적이 있는 등 일련의 통계 결과를 보았을 때 동물 학대는 근절되지 않고 있음.
- 한편 2016년에는 동물원·수족관 전시동물의 적절한 사육환경을 조성하고 보유 생물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하여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음.
- 하지만 서류상 최소 기준만 충족하면 누구든 동물원과 수족관을 운영할 수 있고 전시동물의 서식환경과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상황<sup>6)</sup>에서 실내 체험형 동물원이나 야생동물카페 등과 같은 이른바 유사동물원·수족관이 운영되고 있어<sup>7)</sup> 전시동물의 복지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음.

4) 연도별 조사표본 숫자와 조사방식이 달라 단순비교는 어려우나, 2015년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조사 당시 12.2%만이 동물학대 목격 시 신고하겠다고 답변하였음.

5) 이은주 국회의원실. “부실한 경찰청 ‘동물학대 수사매뉴얼’ 재개정해야”. 2020년 10월 7일자 정의당 원내브리핑 보도자료 (최종검색일: 2020년 12월 8일) <justice21.org>

6) 이형주(2019)에 따르면 현행법에는 이외에도 종 습성과 정상적 행동을 유지시키기 위한 사육환경 요건, 사육 부적합종 지정·고시, 동물쇼를 위한 훈련 금지 등의 동물복지 관련 규정이 없거나 축소되어 있음. 이형주. 2019.1. “전시동물 복지 실태와 개선을 위한 입법 방향”.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자료집(토론회 주최: 이용득 국회의원실, 환경부, (사)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최종검색일: 2020년 12월 8일). 해당 자료집은 (사)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aware.kr)>자료실에서 확인 가능함.

7) 이형주, 위의 자료.

- 서울시의 경우 일찌감치 동물복지와 동물보호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2014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종합적인 동물복지계획(‘서울 동물복지계획 2020’)을 수립하였음.
- 그러나 ①반려동물 수는 매년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내 반려견을 위한 놀이터는 2019년 기준 4개소에 불과한 점, ②유기·유실동물 중 4분의 1이 안락사를 당하는데 유기동물 입양 문화는 아직 미숙하다는 점, ③길고양이 문제와 반려인과 비(非)반려인 사이의 갈등 등 동물과 관련된 사회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 ④동물체험시설 등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동물에 대한 정책이 부족한 점 등은 쉽게 해소되지 않는 과제로 남아있음.<sup>8)</sup>
- 서울시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궁극적으로는 동물이 사람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2019년부터 ‘동물 공존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운영 중임.
- 본 결의안은 오늘날 우리 사회 동물복지·보호의 현실 속에서 동물복지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동물복지와 동물보호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차원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우리 사회 내 반려동물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동물복지 환경 역시 급격히 변화하면서 이와 관련한 시민의 요구가 점점 커져가고 있다는 점에서 동물복지와 동물보호는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중대한 사안<sup>9)</sup>이라

8)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2019.2. “동물 공존도시 서울 기본계획” (시장 방침 제21호, 최종검색일: 2020년 12월 7일)

9)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르면 특별위원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설치 가능함(제56조제1항).

할 수 있음.

- 오늘날 동물이 인간 사회와 공존함으로써 사회 구성원의 심신이 건강해지고 생명존중 문화가 확산되며 관련 산업이 성장하는 등 사회·문화·경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sup>10)</sup>는 점에서 동물복지와 동물보호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구성에 의미가 있다고 판단됨.

### 3 관련 상임위원회 의견 조희 결과

- 본 결의안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7조제2항<sup>11)</sup>에 따라 관련 상임위원회 의견을 조희한 결과 별도의 의견 회신은 없었음(미회신).

10)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앞의 자료

11) 제37조(특별위원회) ② 제1항에 따라 운영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심사할 경우 관련된 상임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